

제51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2. 11. 30., 2013. 3. 23., 2014. 2. 5., 2018. 10. 2.>

1.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명령
2.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중지명령
3. 법 제7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

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또는 「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」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. <신설 2018. 12. 11., 2024. 6. 4.>

1.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또는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신청의 접수, 심사, 의견 요청·청취 및 공고 업무

2. 제46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홍보 및 기술사업화 지원 업무

3. 제46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보유 기술정보의 제공 업무

4. 제46조의6제3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활용실적 접수 및 관리 업무

③ 국토교통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물류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·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 <신설 2018. 10. 2., 2018. 12. 11., 2019. 3. 12.>

1.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그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

2.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된 자료의 접수

3.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추진 시책 마련에 필요한 조사

4.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위한 신청의 접수, 확인 및 심사

5.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위한 신청의 접수, 확인 및 심사

6. 삭제 <2024. 7. 2.>

④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2. 5., 2018. 10. 2., 2018. 12. 11.>

⑤ 국토교통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 10. 2., 2018. 12. 11.>

[제목개정 2018. 12. 11.]

제52조(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)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.

② 시·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사업규모, 사업지역의 특수성,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.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더라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8. 10. 2.>

③ 시·도지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,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제2항 전단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. <신설 2023. 4. 25.>

1.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

2.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·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

제53조(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) ① 시·도지사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·확인한 후 위반사실·이의방법·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8. 10. 2.>

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·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8. 10. 2., 2023. 12. 12.>

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